

보도 일시	즉시 보도 가능	배포 일시	2023. 2. 28.(화) 11:00
담당 부서	수산정책실 수산정책과	책임자	과 장 황준성 (044-200-5420)
		담당자	사무관 김선하 (044-200-5431)

'23~'25년, 연간 1,861억원 규모 수산분야 세제 지속 지원

- '22년 종료 예정이던 국세 10건, 지방세 4건 '25년까지 일몰 연장 -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2022년말 종료 예정이던 수산분야 세제 지원을 2025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. 이로 인해 어업인 등은 3년간 매년 연 1,861억원 내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.

당초에는 기존 수산분야 세제 지원 중 국세 10건, 지방세 4건이 2022년말 일몰될 예정이었다. 하지만 동 건의 세제 지원을 3년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2022년 국세 및 지방세 세제개편안이 '22년 12월 26일, '23년 2월 27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어업인 등은 2025년까지 추가로 세제 지원을 받게 되었다.

이번에 연장되는 주요 국세 세제 지원은 ▲ 어망 등 41종의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면제(연간 1,290억원 내외), ▲ 조합 등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(연간 185억원 내외), ▲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(부가가치세, 개별소비세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교육세 등) 면제(연간 34억원 내외) 등이며, 주요 지방세 세제 지원은 ▲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·지역자원시설세 감면(연간 107억원 내외), ▲ 어업·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(연간 4억원 내외) 등이다.

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“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어업인 등에 대한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.”라며, “2023년에도 수산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
참고

'22년 수산 분야 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

□ **국세**

반영 내용	감면액/年
합 계	1,724.4억원
어업용 기자재(어망 등 41종) 부가가치세 면제	1,290억원
수협 조합법인 예탁금(3천만원 이하)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	152억원
수협 조합법인 출자금(1천만원 이하) 등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	33억원
수협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 특례(과세표준 20억원 이하 9%, 초과 12%)	130억원
영어자녀 증여세 비과세(20톤 미만 어선, 10만㎡ 내 어업권, 4만㎡ 내 어업용 토지)	80억원
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및 장려금에 대한 비과세	3.3억원
8년 이상 자영한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100% 감면	2.3억원
어업인 직수입 어업용 기자재(어망 등 41종) 부가가치세 면제	추정 곤란
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	22.2억원
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	11.6억원

□ **지방세**

반영 내용	감면액/年
합 계	137억원
소형어선 취득세·재산세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 - 자영어업인 지원을 위해 20톤 미만 소형어선 대상 지원	107억원
수협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- 과세표준과 관계없이 법인지방소득세를 10% 적용	9억원
출원에 의한 어업권·양식업권 취득세·등록면허세 등 면제 - 어업인의 영어활동 지원을 위해 어업권 출원에 대한 지원	4억원
수협이 용자 시,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 - 어업인, 영어조합법인에게 용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50% 경감	17억원